

Ⅲ. 2006년도산 산림사업용 종·묘 규격 및 가격

◎ 산림청고시 제2006-103호 : 관보16408호(2006. 12.27)

2006년산 산림사업용 종·묘가격 고시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산 산림사업용 종·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06년 12월 27일

산 립 청 장

○ 성 묘(成苗)

(원/천본)

수 종 별	묘 령	2006년산 가격	비 고
강 잣 나 송 무	1-1	212,000	
	2-1	308,000	
	2-2	338,000	
	2-3	580,000	
	2-2-3	3,033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낙 전 나 송 무	1-1	335,000	
	2-3	473,000	
삼 나 무	1-1	346,000	
	1-1	345,000	
편 백	1-1-1	610,000	
	1-1-2	2,635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	1-2-2	2,716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화 해 백 송	1-1	335,000	
	1-1-2	2,356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리 기 다 소 나 무	1-0	138,000	
	1-1	189,000	
리 기 테 다 소 나 무	1-0	141,000	
	1-1	195,000	
스트로브잣나무	1-2	345,000	
	1-2-3	2,785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	2-2-3	3,250,000	·“분”뜨기 묘목
상 수 리 나 무	1-0	331,000	
	1-1	632,000	
자 작 나 무	1-0	277,000	
	1-1	561,000	
	1-1-1	1,442,000	
물 푸 레 나 무	1-0	198,000	
	1-1	452,000	
느 티 나 무	1-0	255,000	
	1-1	554,000	
	1-1-1	1,233,000	

수 종 별	묘 령	2006년산 가격	비 고
고 로 쇠 나 무	1-0	170,000	
	1-1	395,000	
백 합 나 무	1-0	484,000	
	1-1	998,000	
아 까 시 나 무	1-0	213,000	
오 리 나 무	1-0	262,000	
밤 나 무	저접	1,695,000	
	고접	2,492,000	
민 두 립	C1-0	-	

- 용 기 묘(2007년산 적용)

(원/천본)

수 종 별	묘 령	2007년산 가격	비 고
상수리 나무	1-0	426,000	
소 나 무	2-0	420,000	

※ 부대조건

- 본 묘목은 검사합격을 95%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
-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% 해당액의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
-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
(단, 분뜨기 묘목은 상차 인도가격임)

○ 유 묘(幼苗)

(단위 : 원/천본)

수 종	묘 령	2006년산 가격	비 고
강 송	1-0	42,100	
잣 나 무	2-0	98,300	
낙 엽 송	1-0	46,100	
전 나 무	2-0	55,900	
삼 나 무	1-0	54,500	
편 백	1-0	53,700	
화 백	1-0	47,300	
해 송	1-0	38,600	
리기다 소나무	1-0	39,700	
리기테다소나무	1-0	42,300	
스트로브잣나무	1-0	56,000	
밤 나 무	대목	367,400	

※ 본 가격은 생산비(기업이익, 재해손비 등 제외)기준 가격임

○ 종 자(種子)

(단위 : 원/kg)

수 종	종자품질 기준		금 액
	발 아 율 (%)	효 율 (%)	
강 송	93	87	124,200
잣 나 무	98	64	5,800
낙 엽 송	90	40	172,000
전 나 무	93	25	20,200
삼 나 무	89	32	105,500
편 백	91	12	137,500
화 백	74	31	137,500
해 송	96	92	88,200
리기다 소나무	91	85	77,900
리기테다 소나무	94	85	146,500
오 리 나 무	60	29	115,600
자 작 나 무	78	14	89,500
물 푸 레 나 무	93	47	19,600
아 까 시 나 무	90	64	49,100
상 수 리 나 무	89	57	2,900
밤 나 무	96	61	2,200
호 두 나 무	97	66	12,300
고 로 쇠 나 무	89	26	66,100
느 티 나 무	95	61	75,300
밤나무 접수(친본)	-	-	33,800

※ ○ 종자 수요량을 감안하여 종자 품질기준은 10%까지 내릴 수 있음

○ 본 가격은 생산비(기업이익, 재해손비 등 제외)기준 가격임

- 단, 잣나무, 상수리나무, 밤나무, 호두나무, 고로쇠나무, 느티나무 등의 종자 및 밤나무 접수의 가격은 시·도 조사가 및 임산물 가격동향 조사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임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